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고 제2025-3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손대중 의원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 대상 등 및 중복지원 제외(안 제7조 ~ 안 제8조)
- 환수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회장 (참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전화 032-509-7028 / 팩스 032-509-76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붙임

가. 관련법령 발체사항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등) ① 지원 대상은 신청 시 영수증 발급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

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2024년 1월 이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③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6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1 보건의료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2. 6. 10.>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당뇨병

바. ~ 사. (생략)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